



대구대학교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상호교류협약서



대구대학교(이하 “대구대”라 한다)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(이하 “혈액원”이라 한다)은 상호 우의를 바탕으로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파트너로서 범국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협력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의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- 가. 혈액원과 대구대는 헌혈에 적극 동참하고 헌혈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지원하고 협력한다.
- 나. 대구대는 혈액원이 전개하는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한다.
- 다. 대구대는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활동의 확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한다.
- 라. 혈액원은 대구대와 기타 인도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.

제3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협력분야를 공동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양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효력발생 및 유지) 본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그 유효 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5조(협약의 변경) 양 기관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의 변경은 양 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여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한다.

제6조(협약의 해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합의를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7조(신의 성실의 의무)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 양 기관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의 원칙하에 다양하게 협력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.

2015. 8. 13.



총 장 홍 덕 릉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원 장 김 영 길

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(달성동)